

# 이혼 후 적응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 A Case Study on the Process of Post-Divorce Adjustment

부산대학교 생활환경대학 아동·소비자·주거학과  
석사 문헌숙  
교수 김득성

Dept. of Child · Consumer & Housing, Pusan National Univ.

Master : Hyun-sook Moon

Prof. : Deuk-sung Kim

### ◀ 목 차 ▶

I. 서론	IV. 논의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III. 사례를 통한 결과분석	참고문헌

### < Abstract >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examine difficulties confronted by interviewees during post-divorce adjustment, and to investigate factors which influence critically to the post-divorce adjustment. Interviewees were confronted with severe economic difficulties but the post-divorce adjustment was not much influenced by such economic difficulties. Supportive social network such as parents, brothers and sisters, friends, self-help group of single parents was related to the positive post-divorce adjustment. After divorce, some interviewees did not tend to meet their friends. All parents thought their children to be sources of support throughout the divorce process and their post-divorce life. On the other hand, some noncustodial parents felt guilty and a serious deprivation. Divorce initiator factor was not related to the post-divorce adjustment. To the most interviewees, the period before the decision to divorce was the most difficult one.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 나라의 이혼율은 최근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

된다. 이혼 연령도 과거에는 결혼 후 5년 이내에 이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일정한 연령층에 한정되는 경향이었으나 이제는 모든 연령층에서 행해지고 그 원인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다가 이혼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서 이혼을 하게 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큰

노력 없이 이혼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혼자의 57.7%가 이혼을 생각한 후 1년 이내에 이혼하였으며, 심지어 1개월 이내에 이혼을 하게 된 경우도 11.1%나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조선일보, 1999. 4. 28일자). 특히 외환위기 사태 이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배우자를 버리는 기출과 경제적 파탄에 따른 이혼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부산가정법률상담소 자료집, 1998 ; 부산일보, 1998. 6. 25일자). 1980년 인구 1000명에 대한 조이혼율이 0.6명에서 1996년에는 1.8명으로 3배 증가하였으며 1998년에는 2.6명에 이르러 이혼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통계청, 1999). 또한 결혼에 대한 이혼율은 1972년에 결혼 21쌍당 1쌍이었으나 1980년 결혼 17쌍에 대해 이혼 1쌍이 이루어진데 반해 1995년에는 결혼 6쌍에 대해 1쌍, 1996년에는 결혼 5쌍에 1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통계청, 1998).

미국에서는 Goode(1956)를 시작으로 이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이혼 후에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관련 요인들을 밝히고, 이러한 적응과정의 이해를 토대로 하여 효율적인 적응전략을 세우며, 이혼자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이혼교육 프로그램과 이의 효과에 대한 연구(Arbuthnot & Gordon, 1996; Braver, Salem & DeLus, 1996; Buehler, Betz, Ryan, Legg & Trotter, 1992; Geasler & Blaisure, 1995; Kramer & Washo, 1993)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1960년대에 이태영(1968)의 연구를 시작으로 이혼의 사회인구학적 조사나 이혼동향,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배경요인 등에 대한 연구(최재석, 1982; 박찬미·서병숙, 1987; 황옥자, 1980)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문제 지향적인 시각에서 이혼을 사회문제의 하나로 취급하였고, 이혼 후의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그런데 한경혜(1993a, 1993b)는 이혼 후 적응의 개념을 생활만족도와 자존감으로 변수화하여 양적으로 접근하였으며, 이혼자들의 생활만족도에 현재의 경제적 형편과 재혼 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자존감에는 이혼 후 경험한 정서적 문제와 경제적 형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우리 나라는 사회 문화적 배경, 결혼관, 가족관 등은 물론 이혼의 원인, 이혼과정, 이혼 후 적응양상, 이혼에 관한 사회적 규범 등이 서구와는 매우 다르다. 따라서 우리 나라 이혼자들이 이혼 후에 일어나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가면서 궁극적인 적응이 이루어지는지, 어떠한 요인들이 이혼 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질적 연구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혼자들의 실제 경험세계를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혼당사자 각자의 이혼 경험 세계에 대해 그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의미를 두는 질적 연구가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혼자 개개인의 상황에 따른 이혼 후 적응양상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파악하고,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첫째, 변경할 수 없는 요인들(연령 및 결혼기간, 이혼 후 기간, 자녀 및 이혼제안자)이 이혼 후 적응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변경할 수 있는 요인들(경제적 형편, 사회적 연결망,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 이성관계 형성 및 재혼 및 상담소 이용)이 이혼 후 적응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실태파악과 요인의 규명을 통해 이혼자들에게 시급히 요구되는 실질적인 프로그램과 이혼자들을 위한 사회정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및 대상

이혼자에 대한 연구는 주제의 민감성 때문에 사례를 구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으므로 소수의 제보자를 심층면접하여 이를 주자료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심층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제보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이혼 장애요인, 이혼 후 적응에 도움이 되는 항목 등을 질문지를 통해 조사하여 부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YWCA에서 매년 한 차례씩 이혼이나 사별로 홀로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집단모임을 실시하는 등대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들 중

에서 이혼한 여성들과 접촉하여 7명의 제보자를 선정하였고, 연구자가 자원봉사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는 부산여성의 전화를 통해서 2명, 그리고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4명을 소개받아 총 13명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면접은 1999년 1월 13일부터 1999년 3월 6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총 13사례 중 11명은 이혼한 사람이었고 2명은 별거 중이었는데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는 아니지만 별거기간이 각각 4년과 11년으로 이미 정신적 이혼을 한 상태이므로 이혼 후 적응을 살피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제보자로 선정하였다. 사례 11은 이혼한 지 2개월밖에 안된 상태여서 이혼 후 적응을 살피는데 있어서 좋은 제보자는 아니었지만, 이혼 전 후의 과정과 여러 가지 다른 상황 등을 알아 볼 수 있었고, 제보자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심층면접에서는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통해 작성한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질문내용은 크게 연령과 결혼기간, 이혼 후 기간, 자녀와 이혼제안 여부, 경제적 형편, 사회적 연결망,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 이성관계 및 재혼에 대한 생각, 상담소 이용 여부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면접시에 녹음기 사용에 대한 양해를 구한 후 녹음기를 사용하여 질문과 응답을 녹음한 후 이를 문서로 작성하였다. 문서로 작성하는 일은 연구자와 학부 4학년인 보조연구원 3명의 도움을 받아 함께 작업을 하였다. 면접은 각 사례당 모두 1회 면접으로 종결하였으며, 사례 1과 사례 2의 경우 추후에 전화로 면접을 보충하였다. 면접을 마친 후에는 감사의 표시로 마주해의 '이별 그리고 홀로서기'라는 책을 선물로 주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이혼 후 적응의 정의

이혼 후 적응이라는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서 다

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예전에는 보통 재혼을 하거나 전 배우자와 접촉을 완전히 끊는 단계가 되면 이를 적응(Goode, 1956)이라 하였으며, Federico(1979)는 비록 결혼기간중 일지라도 한 배우자가 자신의 정서적 관여를 철회하기 시작한다면 그와 동시에 이혼적응이 시작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재에는 결혼한 사람으로서 이혼 전 획득한 지위나 전 배우자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감을 독자적으로 확립하여 가정 직장 여가생활 등 일상생활의 제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적응으로 정의하고 있다(Kitson & Raschke, 1981).

한편 Spanier와 Casto(1979)는 이혼은 이혼 전 지위 상실, 배우자 상실과 동시에 새로운 생활양식, 새로운 역할의 변화와 재조직등을 수반한다고 보고, 이혼 후 적응을 상실에 대한 적응과 새로운 생활양식의 획득에 대한 적응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는 이중적인 과정(dual process)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혼 후 적응을 이혼 전 지위나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여 새로운 생활을 확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2. 이혼 후 적응에 관련된 요인들

#### 1) 변경할 수 없는 요인들

##### (1) 연령 및 결혼기간

연령 및 결혼기간은 이혼여성의 적응에 중요한 예측요인으로서 자주 인용되는 것으로 비록 이 두 변수가 연구에 따라 별개로 다루어졌을지라도, 대부분의 연구에서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높았다(Kitson & Raschke, 1981). 결혼기간이 길수록(Goode, 1956 ; Hetherington et al, 1978), 나이가 많을수록(Chiriboga, Roberts & Stein, 1978 ; Hetherington et al, 1978 ; Nelson, 1981) 이혼 후 적응이 어렵다는 결과와 이와는 반대로 나이가 많고 결혼기간이 긴 여성들이 적응을 잘 한다는 연구(Granvold et al, 1979), 그리고 연령이나 결혼기간이 이혼 후의 적응을 예측하는데 유의한 변인이 아니

라는 연구(Pett, 1982) 등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며, 결혼기간은 연령이나 자녀수와 상관관계가 높아서 개별적인 영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 (2) 이혼 후 기간

대부분의 이혼자들은 이혼 후 1-2년이 지나면 적응을 한다는 연구(Goetting, 1980 ; Hetherington et al., 1982)가 있으며 이혼 후 겪게 되는 문제들이 점차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부분 소멸되었으며, 궁극적으로 평형상태에 이르게 되어 사회에 재통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ohannon, 1970).

### (3) 자녀

자녀가 이혼 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다. 대체로 자녀와 관계되는 적응관련 변수들로는 자녀의 유무 및 자녀수, 자녀의 나이, 자녀의 성, 자녀 양육권 등이 있다. 서구의 연구를 살펴보면 자녀는 전반적으로 이혼 후 적응에 부정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자녀가 있으면 시간과 금전적 자원의 지출이 많아지며, 부부가 상호 보완적으로 수행하던 부모의 역할을 혼자서 담당하게 되므로 어려움이 따르고 특히 어린 자녀의 경우에는 적응에 걸림돌이 되며, 이로 인해 여성의 경우는 취업이 불리하게 될 수 있어 여성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영향을 주는 간접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한경혜, 1993a).

둘 이상의 자녀를 가진 이혼 여성은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Goode, 1956),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이혼 여성들의 우울이 증가하였다(Price-Bonham & Balswick, 1980). 또한 Hetherington, Cox 및 Cox(1977)는 자녀의 성도 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는데, 딸보다 아들을 가진 이혼 여성들이 자녀문제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책임을 지고 돌봐야 할 자녀가 있음으로 해서 자녀가 가족 일상생활의 패턴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동기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을 주장한 연구와(Weiss, 1975), 자녀수나 자녀의 나이가 이혼 후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

구(Bursik, 1991)도 있어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4) 이혼제안 및 이혼과정의 주도 여부

이혼을 하게 되므로서 이혼 당사자는 개인적 실패감이나 거부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특히 이혼을 제안하지 않은 쪽에서는 거부당한 느낌이 강하며 자존심이 손상되었다고 느끼며, 이는 자존감의 저하를 가져온다고 하였다(Diedrick, 1991). 따라서 서구의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이혼을 제안한 사람이 더 잘 적응한다(Kurdek & Blisk, 1983 ; Pettit & Bloom, 1984)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혼이 갑작스럽고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정서적 문제가 더 심하고 낮은 적응도를 보인다는 것이다(Spanier & Casto, 1979). 또한 한경혜(1993b)의 연구에서도 자신이 이혼을 먼저 제안한 경우 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고 하였다.

## 2) 변경할 수 있는 요인들

### (1) 경제적 형편

경제적 형편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있어서 이혼 적응과 크게 관련되는데 경제적 어려움은 이혼 후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다(Spanier & Casto, 1979). 특히 이혼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경제적으로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Albrecht(1980)도 이혼 후에 여성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혼과 함께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혼 후 수입이 감소되므로 기술 없이 할 수 있는 저임금 노동시장 혹은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되어 경제적 형편의 악화 내지는 빈곤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Arendell, 1987 ; Weiss, 1975). 하지만 여성들이 낮은 재정 상태에도 불구하고 남성들과 비교할 때 그들의 삶에 전반적으로 더 만족한다는 연구(Diedrick, 1991)도 있다.

### (2) 사회적 연결망

이혼하게 되면 정신적·실제적 도움을 제공받을 사회적 연결망의 필요성이 증가하는데 친구와의 유대관계가 이혼 과정 중 안정성을 제공해 주는 역할

을 하며(Hunt & Hunt, 1977 ; Price-Bonham & Balswick, 1980), 가족(부모, 형제 등)들은 이혼자에게 동반자 역할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도움을 제공하고, 자녀를 돌보아 주거나 이혼 후 거처할 곳을 임시로 마련해 주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Bursik, 1991 ; Weiss, 1975). 하지만 실제로 이혼 후에 이혼자들에게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인 사회적 연결망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가까운 친구들도 이혼 후 초기에는 많은 도움을 주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속도로 멀어지거나(Berman & Turk, 1981), 이혼한 친구를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한 여성으로부터 친구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다(김혜련, 1995). 한경혜(1993b)의 연구에서도 부모들은 이혼 남녀 모두에게 빨래, 식사준비 등의 집안일, 아이 돌보기, 간병 등 실제적인 도움을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지원이 이혼 후 생활에 도움을 주는 유형이 남녀간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연결망과 지지적인 관계를 가진 이혼한 어머니들은 낮은 수준의 지지를 받는 다른 이혼한 어머니들보다 더 적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Raschke, 1977), 더 유능한 부모가 되고(Coletta, 1979), 자아정체감에서 더 나은 전이를 이룬다(Kohen, 1981)고 하였다.

### (3)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이 이혼 후 적응에 중요한 예측요인이라는 인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Price-Bonham & Balswick, 1980), 애착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다르다. 첫째는 이혼 후 전 배우자와의 연결관계를 끊는 것이 최상이라는 견해인데, 애착의 지속은 이혼 후 적응에 부정적이라는 시각(Berman, 1988; Brown et al., 1980 ; Kitson & Raschke, 1981; 한경혜, 1993b)이다. 두 번째는 전 배우자와의 관계가 협조적·우호적이면 이혼 후 적응에 도움을 주며 반대로 갈등적이면 적응에 부정적이라는 시각이다(Bursik, 1991; Goetting, 1980; Nelson, 1981). 세 번째는 전반적인 이혼 후 적응과 애착은 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Spanier & Casto, 1979).

### (4) 새로운 이성관계 형성 및 재혼

재혼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혼 후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한경혜, 1993b), 재혼이 이혼한 사람들의 긍정적 적응에 중요한 예측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재혼과 관련하여 정식 혼인관계는 아닐지라도 이혼자들에게 이혼 후에 이성 파트너의 존재가 현재의 기분상태에 유의한 영향이 있다는 것과(Thabes, 1997), 만족할만한 친밀한 이성관계의 확립이 이혼 후 2년간 자아개념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요소(Hetherington et al., 1977)라는 연구도 있다.

### (5) 상담소 이용

전문적인 상담소의 이용이 이혼 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Thabes(1997)는 이혼자들이 상담소 이용 경험이 다소 유의했다고 하였으나, 상담소 이용을 하지 않은 사람들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 III. 사례를 통한 결과분석

본 연구의 제보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 1. 변경할 수 없는 요인들

#### 1) 연령 및 결혼기간

제보자들의 나이는 36세에서 47세까지로 평균연령은 41.2세였으며, 평균결혼기간 9.1년이였다. 제보자들은 이혼하지 않으려고 마지막까지 노력하다 결국은 이혼하게 되어, 만약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면 더 일찍 이혼하는 것이 이혼 후 적응에 더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으로 보아 대체로 나이가 많거나 결혼기간이 길면 이혼 후 적응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결혼기간이나 연령은 자녀수나 자녀의 나이와도 관련되어 그 개별적 영향을 명확히 구분해 내기가 쉽지 않다.

차라리 남편하고 파탄이 날 것 같으면 좀 더 일찍, 한

〈표 1〉 제보자들의 일반적 특성

제보자	성별	나이	직업	전 배우자의 직업	학력	전 배우자의 학력	종교	종교기관 참석도	이혼전결혼 만족도	결혼 형태	이혼 기간	이혼후 형태
사례1	여	41세	공무원	회사원	대졸	대졸	기독교 (이혼후)	1주에 2-3회	중매혼	만 족	협의 이혼	1년 5개월
사례2	여	46세	피아노 교 습	서점 운영	대졸	대졸	기독교	매일	중매혼	약 간 불만족	협의 이혼	18년
사례3	여	45세	보 험 설계사	양장점 운 영	고졸	고졸	없음		연애혼	보 통		별거 11년
사례4	여	41세	어린이집 원 장	회사원	대졸	대졸	기독교	1년에 1-2회	중매혼	매 우 불만족	협의 이혼	12년
사례5	여	38세	무	고철납품	고졸	대학 중퇴	천주교 (이혼후)	1주에 2-3회	중매혼	매 우 불만족	협의 이혼	4년
사례6	여	42세	무	회사원	대졸	대학원	기독교	1주에 2-3회	중매혼	매 우 불만족	협의 이혼	10년
사례7	여	43세	무	공무원	대졸	고졸	기독교	참석 안함	중매혼	매 우 불만족	협의 이혼	7년
사례8	여	41세	호텔객실 정 비	유통사업	고졸	고졸	천주교	1주에 1 회	연애혼	만 족	협의	1년 1개월
사례9	여	47세	가게운영	무	국졸	국졸	없음		연애혼	매 우 불만족	재판 이혼	3년 2개월
사례10	여	38세	식 당 종업원	택시기사	국졸	국졸	불교	참석 안함	중매혼	매 우 불만족		별거 4년
사례11	여	40세	식당운영	식당운영	고교 중퇴	고졸	불교	1달에 1-2회	중매혼	매 우 불만족	협의 이혼	2개월
사례12	여	36세	회사원	공무원	고졸	고졸	기독교	참석 안함	중매혼	약 간 불만족	협의 이혼	7년 5개월
사례13	여	38세	보 험 설계사	서 적 외관원	고교 중퇴	대학 중퇴	기독교	1주에 2-3회	연애혼	매 우 불만족	재판 이혼	7년

십년 살고 헤어졌다면 더 나왔을 거예요. 제가 전문적인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면 경제적인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됐을 건데. (사례 3)

## 2) 이혼 후 기간

제보자들의 이혼 후 기간은 최저 2개월에서 최고 18년까지 다양하다. 그러한 다양함 속에서 이혼자들이 이혼 후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 후 겪는 문제들이 소멸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 (1) 1-2년 경과 후 대체로 적응

모두 아홉 사례(69%)가 이혼 후 1-2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혼 후 겪게 되는 문제들이 대부분 소멸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시간이 1년 2년 지나니까 조금씩 괜찮아지는데. 내 나름대로 체념도 하고 다독거리고 괜찮더라고. 열심히 사니까 좋은 일도 생기고 살 가치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사례 4)

### (2) 10년 정도 지나서 자유로움을 느낀 경우

한편 본 연구에서는 1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뒤

에야 친구도 만나고 주위에 이혼을 감추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혼을 현실로 받아들였다는 경우가 세 사례(사례 2, 사례 6, 사례 11) 있었다.

이혼 후에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나아졌지만 그래도 요즘같이 마음 편하고 감사하며 살게 되기까지 10년 정도 걸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기까지 신앙의 힘이 제일 컸지요. (사례 6)

또한 이혼자들의 이혼 전, 이혼 과정 그리고 이혼 후의 심리변화를 보면 열 세 사례 중 열 한 사례(84.6%)가 이혼 과정이나 이혼 후보다 이혼 전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고 응답하였다.

### 3) 자녀

총 열 세 사례 중 현재 제보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는 여섯 사례이며, 전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는 경우는 네 사례 그리고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없는 경우도 세 사례가 있었다. 각 제보자별 자녀 수 및 자녀양육자는 <표 2>와 같다.

#### (1) 자녀양육의 어려움

##### ① 자녀가 어린 경우

이혼 여성으로서 자녀 양육은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이혼 후 겪게 되는 큰 어려움 중의 하나이다. 특히 어린 자녀를 부모나 다른 가족 혹은 이웃이나 보육시설에 맡길 형편이 못되는 이혼 여성들은 직장이나 생업과 자녀 양육을 양립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을 알 수 있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출장했든 가면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방에 둔채 문 잠궜놓고 갔어요. 과자랑 먹을 것을 잔뜩 사 놓고 몇 시간후에 돌아오면 아이는 울고 앉아 있거나 울다가 지쳤는지 쓰러져 자고 있어요. 그

거 보면서 내 마음이 굉장히 아팠지. 그때 많이 울었어요. (사례 2)

##### ② 자녀가 학령기일 경우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부모의 기대만큼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점, 다른 사람들처럼 여유 있게 뒷바라지를 못해서 죄의식을 갖게 되는 점, 부모로서 자녀의 학교교육을 돌봐 줄 시간 부족을 주된 어려움으로 꼽았다. 또 아빠와 함께 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없을 때,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 가족란을 적어 넣을 때 어려움에 봉착했던 점 및 학부모 모임에 자유롭게 나서지 못하는 점 등도 어려운 일이었다.

아이 키우면서 살다보면 아빠가 가야될 곳이 많잖아요? 유치원에서도 아빠와 함께 하는 행사가 많았고, 초등학교 때에도 아빠교실이라고 해 가지고 아빠와 같이 가서 하루 자고 오는 것도 있고 하는데 우리 딸은 아빠가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사례 2)

##### ③ 자녀가 사춘기일 경우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면서부터 아빠가 없는 가정을 아이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일까 봐 염려했으며 아빠만의 역할을 엄마가 대신 해 줄 수 없을 때, 또 크면서 아빠와 함께 의논해야 할 일에 혼자서 결정해야 될 때를 어려움으로 꼽았다.

지금 우리 딸이 한참 사춘기인데 반항하고 이럴 때, 어떻게 다루어줘야 할지 참 힘들더라구요. 혼자 아빠 엄마 노릇 두 가지가 다는 안되더라구요. 아빠가 해줄 몫을 엄마가 못해주니까 그런 게 굉장히 힘들지. (사례 4)

<표 2> 제보자별 자녀 수 및 자녀양육자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사례6	사례7	사례8	사례9	사례10	사례11	사례12	사례13
이혼당시 친자녀수	무	딸1	아들2 딸 1	딸1	아들1 딸 2	아들1	아들1 딸 1	무	아들2	아들1 딸 2	무	아들1	딸1
자녀 양육자		본인	본인	본인	전 배우자	전 배우자	전 배우자		본인	전 배우자		본인	본인

### (2) 자녀의 성별에 따른 이혼자의 적응

아들보다 딸을 양육하는데 힘든 경우가 한 사례, 자녀가 아들인 경우에 딸이었으면 하고 바라는 경우가 한 사례, 현재 딸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딸이어서 좋다고 대답한 사례가 세 사례, 아들 형제를 키우고 나니 든든해서 좋다는 경우가 한 사례였다. 이러한 차이는 이혼자들이 처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결혼 생활 중에는 여성들이 대개 아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이혼 한 뒤에 딸을 선호하는 이유는 자녀를 키우면서 동성간에 느끼는 편안함과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서라고 여겨진다.

우리 애가 딸이었으면 하는 것 제일 많이 느껴요. 커갈수록 아들이니까 아무래도 엄마와 거리가 생겨요. 이왕에 이렇게 자식을 키울 팔자면은 아들보다는 딸이었으면 내가 더 외롭지 않고 남편의 몇 배로 보상을 받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례 12)

딸이었으니까 천만다행이죠. 아들이었으면 하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여자들끼리 살면 설령 단칸방에서 지지고 볶고 해도 불편한 것이 없잖아요. 남자 아이 같았으면 좀 커봐요, 감출 것은 감추고 그리고 속애기도 못하잖아요. (사례 13)

### (3) 자녀로부터 받는 지원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여섯 사례 모두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자녀가 어리므로 해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컸지만 그 어려움에 비할 수 없는 정신적·심리적 지원을 자녀로부터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서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한국적 상황에서 가능한 일이라 사료된다.

반면에 전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상실감으로 인해 어머니로서 심한 심리적 어려움(사례 5)을 겪고 있었으며, 사례 7의 경우에는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너무 외롭고 괴롭고 의욕이 하나도 없고 죽고 싶을 때, 애들 생각이 나더라구예. 내가 죽고 나면 저 애들이 불쌍해서 어찌겠나 싶으니깐, 살아야겠다 싶더라구예. 사실 아이들은 내 마음의 지주이고 정신적으로 항상 희망이잖아예. (사례3)

### 4) 이혼 제안 및 이혼과정의 주도여부

이혼제안자는 부부 중에서 이혼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쪽의 배우자를 말하며, 반면에 비제안자는 그러한 결정에 실제로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 쪽의 배우자를 일컫는다. 서구의 연구에서 이혼부부에게 제안자라는 이익이 얼마동안 존속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많지 않다. 지금까지 서구의 많은 연구들은 이혼제안자가 비제안자보다 이혼 후 적응에 더 긍정적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되는 경향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보자가 이혼을 제안한 경우가 열 세 사례 중 열 두 사례(92.3%)로 거의 대부분이 이혼을 제안했지만 이혼을 제안한 현상 이면의 특성은 서구의 경우와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혼 전에 별거를 경험한 경우가 이혼 사례(70%)로 제보자들의 2/3이상이 이혼 전에 1회 이상 별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자별 이혼원인 및 별거 횟수와 이혼제안 여부는 <표 3>과 같다.

내 쪽에서 제안을 했다고 해서 괜찮은건 아니고 이미 괴로운 것은 이혼 전에 일단락 했을 때였으니까 마음도 편하고 그랬을 뿐이었지. 내가 아이를 못 낳은 것이 큰 이유였지만, 어찌됐든 남편 때문에 이렇게까지 왔는데 뭐가 나은 게 있겠어요. (사례 8)

남편은 우리 작은아이 백일 때부터 바람을 피웠어요. 부양능력도 없고 정리를 해야겠다고 혼자 속으로 늘 생각했어요. 이혼은 내가 제안해서 모든 것을 나 혼자 처리했지만 더 괴로운 건 나왔고 남편은 괴로운 것도 모를 인간이에요. (사례 9)

남편의 가출로 11년에 걸쳐 별거를 하고 있는 사례 3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보자(여자)쪽에서 이혼을 제안하였다. 사례 13의 경우에는 자신이 제안해서 이혼을 하게 된 것이 마냥 신나고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열 한 사례, 84.6%)에 이혼을 먼저 제안하였다고 해서 괴로움이 덜하거나 이혼 후에 더 적응을 잘하였다고 응답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혼을 먼저 제안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잘 적응한다는 연구결과(Kurdek & Blisk, 1983 ; Pettit & Bloom, 1984 ; 한경혜, 1993b)와 큰 차이를 보인다.



<표 3> 제보자별 이혼원인과 별거 및 이혼제안 여부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사례6	사례7	사례8	사례9	사례10	사례11	사례12	사례13
이혼 원인	경제파탄 외도	음주 성격 차이	성격차이 애정없음	외도 음주	폭력 외도	의처증 성적 부적응	외도 애정 없음	본인 불임 외도	부양능력 없음 외도	폭력 도박	정신적 학대 성격차이	외도 성격차이	애정없음 부양능력 없음
별거유무 및 횟수	없음	1회	11년째 별거	없음	2회	1회	1회	1회	없음	4년째 별거	1회	1회	없음
이혼 제안자	본인	본인	전 배우자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서구의 경우 이혼이 어떠한 특별한 이유나 배우자에게 결점이 없더라도 이혼이 허용되고 있는 무결점 이혼(no-fault divorce)이 수용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아직도 한국에서는 배우자의 외도나 악의의 유기, 본인의 확대로 인한 이혼이 많으며(김정옥, 1993) 이는 도저히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혼여성의 경우에 그러한 결혼파탄의 책임이 주로 남편에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혼을 제안했다고 해서 적응에 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즉, 한국의 경우 이혼제안자 요인은 이혼 후 적응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2. 변경할 수 있는 요인들

1) 경제적 형편

이혼 전과 이혼 후를 비교할 때, 경제적 형편이 더 나빠졌다고 응답한 경우는 총 열 세 사례 중 여

덟 사례(62%)이고, 더 나아졌다고 응답한 경우는 다섯 사례(38%)여서 이혼 여성들이 이혼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경제적 형편이 더 나빠졌다고 응답한 여덟 사례 중 경제적 형편의 하락으로 이혼 후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경우는 한 사례(사례3, 12%) 뿐이었고, 나머지 일곱 사례(88%)는 경제적 형편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자들의 경제적 형편은 중·하류에 속하는 경우가 각각 반반 정도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형편에 대한 만족도와 생활만족도와의 비교에서 대부분 생활만족도가 좀 더 높게 나타나서 객관적인 경제적 형편의 하락이 현재의 주관적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고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제보자별 경제적 형편과 생활만족도는 <표 4>와 같다.

<표 4> 제보자별 경제적 형편과 생활만족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사례6	사례7	사례8	사례9	사례10	사례11	사례12	사례13
경제적 형편	중하	중하	하	중중	하	하	중하	하	중하	하	하	중중	중하
경제적 형편 만족도	약간 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약간 만족	약간 불만족	매우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불만족	보통	보통
생활 만족도	매우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보통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약간 만족

## (1) 경제적 형편이 나빠진 경우

## ① 경제적 형편의 하락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경우

경제적 형편이 더 나빠졌다고 응답한 사례 중 사례 3은 별거 이후 11년동안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나 자녀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혼자서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지금 너무 힘들지예. 남편이 전혀 생활비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아이들을 다 키우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안좋지예. 1년에 명절이면 아이들 보겠다고 두 번 정도 오는데 그때 몇 십만원 줘예. 작년 추석에는 20만원을 갖고 내려와서는 올라갈 때 기름값 달라 하길래 7만원을 줬어예. 그래서 제가 “그래, 십 삼만원, 한 달에 만원이네. 일년이면 십 이만원, 만원은 보너스네. 참 더럽다 더러워, 아이고, 제발 돈 좀 많이 벌어라. 많이 벌어가 많이 좀 줘라.” 이랬어예. (사례 3)

이 경우에는 결혼하고 전업주부로만 10년 넘게 생활하다가 이혼 후에 보험영업직에 뛰어들어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극도로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사실 결혼 후 집에서 가사와 자녀양육에만 전념하던 여성이 이혼 후에 결혼 전의 자신의 직업경력이나 학력을 살려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란 저임금의 단순 육체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혼 후에 이혼자들이 실제적으로 부딪치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 ② 경제적 형편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경우

이혼 후에 경제적 형편이 나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현재 상태에 더 만족한다는 경우가 여섯 사례이며, 나빠졌지만 개의치 않는다는 경우는 한 사례였다.

경제적 형편은 이혼 전보다 좀 못하지만, 매맞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도 지금이 나아요. (사례 5)

전 배우자의 심각한 폭력으로 이혼한 사례 5와 사례 10의 경우에는 이혼 후가 이혼 전보다 경제적

형편은 더 빈곤해졌지만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다.

이혼 전보다 경제적 형편이 훨씬 안 좋아졌어요. 이혼 전의 1/5도 안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드릴 물질이 있다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감사해요. 또 친정엄마와 남동생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 현재의 생활에도 별 불편이 없어요. 이건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리 된 거예요. (사례 6)

사례 6은 이혼 후 경제적 형편은 더 어렵지만 깊은 신앙심으로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며 감사고 사는 경우이다. 이는 종교가 그들의 생활을 큰 힘으로 지배하는 경우로서 종교활동이 이혼 후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

사례 6과 사례 8 (무남독녀로 친정엄마와 함께 살고 있음)은 뚜렷하고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 후 부모나 형제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모나 형제에게서 도움을 받을 여유가 없는 사람이 많음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긍정적인 생활모습이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며, 이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대안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 사례 7과 사례 11(위자료를 받음)을 제외하고 열 한 사례(84.6%)의 제보자가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또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자녀양육비 등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혼 후에 경제적 하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하락을 경험한 여덟 사례 중 일곱 사례는 오히려 객관적인 경제적 수준은 떨어졌지만 이혼자의 주관적인 생활만족도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전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해 이혼한 사례 5와 사례 10의 경우는 만족의 강도가 더 큰 것으로 응답했다. 따라서 이혼 후에 단지 재정적 수입이 줄었다고 그것이 곧 이혼 후 적응에 부정적이라는 기존의 시각은 지지되지 않는 경향이었다.

## (2) 경제적 형편이 좋아진 경우

이혼 후 제보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혼 전보다 경제적 형편이 더 나아진 경우가

다섯 사례나 되었다. 다섯 사례 모두 이혼 후 위자료나 자녀양육비를 전혀 받지 않은 상태이고, 사례 12는 오히려 남편이 결혼생활 중에 진 빚까지 갚아 주면서도 이혼 후에 경제적 형편이 더 나아졌다. 이는 이혼 전에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여서 거의 밑바닥 정도의 생활을 하다가 여성이 이혼 후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자영업이나 서비스 업종 혹은 판매직에 종사하며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어려움을 극복한 경우가 많았고 비교적 안정된 직장을 가진 경우도 있었다.

일년 중 추석하고 설날 아침만 딱 두 번 우리 아이들하고 밥을 같이 먹는다면 내가 얼마나 시간적인 여유 없이 살았는지 알겠지요? 매일 새벽 5시면 집을 나서는데 어떤 때는 아이들 아침밥도 못해놓고 나오면 저희들이 해먹고 다니기도 하고... .. 힘들다고 생각할 겨를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밑바닥부터 단계단계 올라와서 차츰 나아졌고 이러한 상태에 만족해요. 애들도 특별한 사고 없이 잘 자라 주었고요. (사례 9)

## 2) 사회적 연결망

### (1) 부모·형제

사례 6은 부모나 형제로부터 자신의 이혼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자신의 경험을 이해 받음으로써 심리적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이혼 후에 친정집에 부모나 형제와 함께 거주함으로써 안정된 거처를 제공 받고 있었다.

이혼 후에는 부모님한테 다른 형제보다 더 사랑도 많이 받고 엄마랑 동생부부랑 함께 사는 것도 불편한 것 없고 좋아요. 남편과의 결혼생활에서 정신병을 얻어 입원하고, 이혼 후에도 그 후유증으로 몇 달간 입원했으니까 제가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이나 형제들은 다 찬성했어요. (사례 6)

또한 사례 12는 자녀양육과 직장생활을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친정부모로부터 자녀 보살핌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부모나 형제로부터 경제적 지원이나 심리적 지지를 받거나 또는 거처를 제공받거나 자녀의 보살핌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하

고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부모가 없거나 또는 부모자신들이 이러한 지원을 할만한 경제적 자원이 없는 경우이다. 부모가 돌아가셔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부모가 경제적인 역력이 없어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모두 여섯 사례였다. 이들은 경제적·심리적 지원망의 부족으로 이혼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되며 아예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지원망의 상실은 처음부터 포기하면 되지만, 부모나 형제로부터 비난을 받는 경우는 적응하기에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위로 오빠 둘 아래로 남동생 하나이고 딸은 나 하나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터놓을 데가 없어요. 다들 사고방식이 고지식해요. 남편이 잘못했다고 했는데 그걸 끝까지 안 털어주고 나왔다고 나한테 잘못을 돌리더라고요. (사례 12)

### (2) 친구

이혼 후 지원에 있어 친구와 가족(부모, 형제)의 기능에는 차이가 있다. Hunt와 Hunt(1977) 및 Price-Bonham과 Balswick(1980)은 친구들과의 유대관계가 이혼과정 중 가족이 제공해 줄 수 없는 성질의 정서적 안정성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친구 도움 많이 받지요. 제가 너무 힘들 때 좋은 얘기도 해 주고, 적지만 경제적인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지네들이 풍족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요. (사례 3)

그러나 이혼 후 이혼 여성들은 자신의 이혼을 숨기려하고 친구들과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을 보였다. 친구들이 이혼한 친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자가 이혼의 충격으로부터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친구들과의 만남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 중에서도 자신과 같이 이혼한 친구와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었다.

내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혼을 한 친구하고만 계속 연락이 됐고 다른 친구는 한 10년 지나서 최근에 연락이 됐어요. 그 친구하고는 이혼을 했기 때문에 서로 위안이 되었어요. (사례 6)

이혼하고 나서 친구들 안 만났어요. 괜히 자기들은 결혼생활 잘하고 있는데, 내 핸드캡이잖아요. 내 보호

랄까, 관리를 하는 거지요. 인자는 정서적으로 괜찮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지더라고요. (사례 4)

또한 친구가 만나자고 하여도 이혼한 자신과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와 서로의 일상생활이 다르므로 대화가 단절되어 만남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경우도 있었다. 즉 서로 달라진 삶의 문제들이 실제 친구와의 이해와 공감의 폭을 제한하며 현실적인 교류를 어렵게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위의 사례 6이 이혼한 친구와만 계속해서 교제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친구들이 나를 배려해서 만나 준 셈이죠. 그런데 한 두 번 만나니까 대화가 안돼요. 자기네들은 주로 신랑 이야기, 아이 이야기인데 난 회사 이야기만 하니까 이야기가 안되더라고요. 농담이나 하고 진지한 대화가 안되니까 점차 단절되더라고요. (사례 12)

Thabes(1997)는 이혼자들이 이혼시기에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에게 힘이 되어 주는 관계 즉, 자기 주변에 의지할 사람들의 연결망(가족이나 친구)을 갖는 것이 우울을 완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제보자들이 이혼 후에 친구와의 만남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이혼이나 사별한 사람들의 모임

본 연구의 제보자 중 등대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7명이다. 이 모임은 1994년부터 매년 1기씩 배출하여 현재 5기까지 각 기별로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0명 안팎의 인원이 모이는데 결속력도 강하고 매월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었다.

우리끼리는 마음이 통하고 다 아픈 게 있으니까 나 이차이가 있어도 큰 형님 하기도 하고 막내야 부르기도 하고 세대차이가 없어요. 적은 것이지만 보육원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래요. (사례 4)

이 모임은 일반적인 사회의 친목 모임과는 달라서 사회계층이나 학력, 나이에 관계없이 단지 이혼이나 사별로 홀로 되었다는 공통점 하나로 서로에게 때로는 친구보다도 더 큰 위안과 지지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거 중에 등대모임을 알게 되어 아주 도움이 됐죠.

제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이 모임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이 친구들이 너무 고마워요. (사례 8)

이 모임에 참여하게 된 제보자들은 평소에 자신들을 이해하고 지지해 줄 준거집단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던 차에 등대모임에 관해 신문을 보고 처음으로 알게 되어 스스로 이 모임에 참여하였으며, 참여한 제보자 모두가 이 모임을 통해 심리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

일단 이혼이 이루어지면 제보자들은 전 배우자와 전혀 접촉하지 않거나 거의 접촉하지 않는 것(평균 3-4년에 전화 접촉 1회)으로 드러났으며, 사례 3과 사례 5의 경우에만 1년에 1-2회 정도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하는 경우는 단 한 사례도 없었다. 이것에 대해 제보자들은 이혼한 뒤에 서로 연락할 일도 없을뿐더러 연락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하므로써 전 배우자에 대한 만남을 원하지 않았으며, 전 배우자에 대한 근황을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열 두 사례(92.3%)의 제보자들이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이 전혀 없으며 다시 재결합할 의사도 거의 없는 것으로 응답했다. 또한 자신의 이혼에 대해 후회하지도 않고 비교적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어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이 적을수록 적응에 긍정적인 것이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

전 남편에 대해 미련이나 합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부부라는 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어쨌든 십년 가까운 세월을 같이 살았는데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잊어지더라고요. 아이가 있었다면 좀 힘들었겠지. (사례 1)

전 남편에 대한 애착은 전혀 없어요. 어쩌다 남편 생각만 해도 뺨이 와서 붙는 것 같이 징그러워요. 이혼 전에도 남편이 임질이라는 사실을 안 후부터 사람으로 안 보였어요. (사례 13)

전 남편과의 사이에 서로를 연결짓는 고리역할을 하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 이혼 후에 전 남편에 대한 애착이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자녀가 있어도 전 남편에 대한 혐오감으로 애착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애착의 감

<표 5> 제보자별 전 배우자와의 관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사례6	사례7	사례8	사례9	사례10	사례11	사례12	사례13
이혼 후 전배우자와의 관계	단절	배우자 사망	년1-2회 만남	단절	년1-2회 만남	단절	2회 전화 접촉	2회 전화 접촉	1회 전화 접촉	1-2회 전화 접촉	1회 만남	2-3회 전화 접촉	2-3회 전화 접촉
전 배우자의 재혼여부	모름		다 른 여자와 동 거	재혼	재혼 안함	모름	재혼	재혼 안함	모름	다 른 여자와 동 거	다 른 여자와 동 거	재혼 안함	다 른 여자와 동 거

정은 아니지만 자녀로 인해 연락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자녀가 걱정되어 전 남편의 소식이나 근황을 궁금해하였다. 특히 사례 5의 경우에는 남편의 심각한 폭력으로 이혼을 했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과의 재결합 의사를 약하게 내비쳤다. 이는 남편에게 애정이 있거나 이혼 후 생활이 불만족스러워서 아니라 자신의 삶보다 자녀를 먼저 생각하는 한국적인 모성애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혼하기 전에는 내가 남편에게 애정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헤어지고 난 지금 생각해보니 애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례 11)

사례 11은 면접 당시 이혼 한 지 두 달이 채 안되었고 이혼을 정말 원했다기 보다는 남편에게 겁만 줌 주려는 의도에서 소송을 제기 했는데 남편이 협의이혼 하자고 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이혼을 하게 된 경우이므로 이혼을 후회하기도 했고, 이혼 후에 전 남편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것 같다고 응답해 법적 이혼은 했지만 제보자 자신이 아직 정신적 이혼이 안된 혼란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같은 혼란스러운 애착감정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계속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4) 새로운 이성관계 형성 및 재혼

(1) 재혼을 원하는 배경요인

우리 사회에서는 이혼을 비정상적이고 이혼자는 불행하다는 편견의 획일적 담론이 만연돼 있다. 이혼자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결혼=정상

=행복이며, 이혼=비정상=불행이라는 획일적인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깊고도 넓게 깔려있는 사회적 통념을 반영한 것이라 해석된다.

욕심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보아스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혼자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사회생활에서 정상적인 것이고 이혼이 비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례 1)

여자가 혼자 있는 것보다 남편이 있으면 주위의 시선이 다르잖아요. 아무튼 돈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주위에서 보는 시선도 다르니까 재혼을 하고 싶어요. (사례 10)

마음이 참 너그럽고 따뜻하고, 우리 애들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노후를 한번 맡겨 보고 싶은 생각은 들어요. 고독보다 무서운 병은 없다고 밤에 잠이 깨어서 '나는 혼자구나' 생각하면 너무 외롭고 끔찍해요. 그런데 재혼은 겁이 나요. 좋은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고 남자들은 무조건 성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지예. (사례 3)

제보자들이 재혼을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 재혼을 원하는 이유는 경제적 안정·심리적 안정 및 성적인 것을 포함한 심각한 외로움 때문에 그리고 남편이 없는 이혼한 여자에 대한 주위의 시선과 결혼생활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재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보자들은 재혼을 원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재혼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이성과의 데이팅을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혼 여성들이 새로운 이성관계를 갖고 싶어

도 남성들이 자신들을 너무 성적인 대상으로 보고 성적인 것에만 집착한다고 토로했다. 이는 남성들이 이혼한 여성으로부터 유일하게 원하는 것은 성이기 때문에 이혼한 여성이 남성과 새로운 관계를 확립하기가 매우 어려웠다(Spanier & Casto, 1979)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를 남녀간의 차이로 볼 것 인지에 대해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 (2) 재혼을 원하지 않는 배경요인

총 열 세 사례 중 아홉 사례가 재혼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그 중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섯 사례는 자녀를 위해서 재혼하지 않을 생각이며, 자녀가 다 성장한 이후에는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예로 볼 때, 이혼을 결심할 때에 자녀에 대한 보살핌이 가장 염려가 되었다고 응답한 것과 같이 재혼을 고려할 때에도 역시 현재 양육하고 있는 자녀가 제일 큰 걸림돌임을 알 수 있다.

우리 딸을 생각하니까 안되겠더라고요. 만날만한 남자는 나보다 한 두 살은 더 많은데 대개 우리 애 만한 남자애가 있더라고요. 선을 한 번 봤는데 우리 아이보다 두 살 많은 아들이 있는거라요. 두말 않고 안한다고 했어. (중략) 재혼은 더 어렵겠더라고요.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지. (사례 4)

또한 전 배우자에 대한 혐오감과 배신감, 이혼 후 만나 본 남성들에 대한 불신으로 남자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서 재혼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두 사례 있었다.

내가 진짜 입에 풀칠할 수 있는 한 남자하고 다시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주위에 재혼을 하고 싶어서 발병을 하는 사람을 봤는데 정말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데. 남자한테 덜 당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데. (사례 7)

재혼할 생각 없어요. 남자라면 징그러우니까. 주위에서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재혼하라고 그러는데 꼭 재혼을 해야만 여자가 행복한 건가요? 가서 잘못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 우리 딸은 어떻게 하고, 그냥 혼자서 맘껏 자유롭게 살면 되는데 왜 근심 걱정을 또 짊어져야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례 13)

특히, 사례 13의 경우에는 재혼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전 배우자에 대한 혐오감 때문이지만 한편으로는 또다시 재혼을 해서 아내노릇과 여자역할을 하기보다는 자녀를 키우면서 혼자서 자유롭게 살겠다고 응답한 것을 볼 때, 자신의 현실경험을 통해 이혼하고 아이까지 있는 자신에게 맞는 재혼상대자는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나름대로 직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성적욕구 문제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성을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혼자들에게 있어서 성적인 문제는 중요하면서도 간과되어 온 경향이 있다. 실제 결혼생활에서 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혼자들은 독신자와는 달리 결혼생활을 통해 성을 알고 그 기쁨을 누린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면 성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다룰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문제는 변화순(1996)과 임춘희(1998)의 연구에서도 약간 다루어 졌지만 경제적 어려움이나 자녀양육의 어려움 등에 치중해 그 실태를 알리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체보자들은 갑자기 결핍된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몸을 피곤하게 하므로써 억제하였고 기도를 하므로써 절제하기도 했으며 또는 그냥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대충 넘어간다고 응답했다.

결혼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잘 아니까 사실 많이 괴롭죠. 참 외로워요. 외롭다는 게 고독감 같은 게 아니고 남자 냄새가 그립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위에서 남자를 만나면 자꾸 욕구가 생겨져요.(중략) 처음엔 극복하기 힘들더라고요. 나는 이혼했는데 괜찮지 하는 마음도 들고, 내가 뭐 지키고 이래봐야 뭐하겠느냐 하는 마음도 순간적으로 들기도 하고 이겨내기 힘들어요. 한때는 석녀가 되려고 그 방법에 어떤 것이 있는지 책 봤다면 아시겠지요? 지금 생각하면 좀 촌스럽고 우습지만, 그때는 심각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한번은 산부인과를

찾아가 자궁을 들어내달라고 했어요.(중략)...(사례 12)

내 육신을 바쁘게 만들죠. 또 기도해요. 새벽에 기도 회도 갔다오고 운동도 가고 하루종일 내 자신을 혹사시켜서 그런 맘이 틀 여유를 안주는 거죠. (사례 13)

또한 성적인 욕구해결을 위해 전 배우자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경우도 두 사례 있었다.

생리적인 현상, 정말 내 몸이 원하는데 할 수 있는 상대가 없으니까. 그것도 참 힘들더라구요. 그래 자위하잖아. 그런데 너무 기분이 나쁘고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 내 친구들한테 돈 벌면 나 호스트 바에 갈 거다. 거기 가서 마음에 드는 애 끌라 가지고..... 그러면 내 친구들이 웃어. 웃지만 나는 그게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절실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남자들은 참 편리하겠대, 사랑 없이도 돈으로 여자를 살 수도 있는데 여자는 안 되니까. 남편이 일년에 명절이면, 한 두 번 오거든요. 지금까지 두 번 정도 관계를 가졌어. 그게 참 회한하더라구요. 내 마음을 빗장을 탁 걸어 잠그고 “너는 아니다. 그리고 너는 좋은 여자하고 살고 있다 아이가”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래, 내 몸이 원하니깐 한번 해결을 하자.’ 그럴 때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일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몰두하고 바쁠 때는 그런 생각은 못 하지. (사례 3)

그외에도 별거나 이혼 후에 일회성 만남으로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경우(사례 7)도 있었다. 성적인 문제는 극히 개인적인 영역으로서 이 욕구의 해결을 위해서 사회에서 해줄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혼자들에게 이러한 성적인 욕구가 심각하다는 인식과 함께 이의 해결방안의 하나로서 사회에서 공적으로 이혼자나 홀로된 사람들이 건전하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 5) 상담소 이용

상담소의 이용은 총 열 세 사례 중 여섯 사례가 상담소를 이용할 생각도 못했으며, 상담소에 대한 정보를 몰라 이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네 사례는 상담소를 이용했으나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했으며, 사례 5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쉼터를 이용해 도움을 받았으며, 그 외 한 사례만이 상담소 이용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법적인 것에 대해서 절차도 모르고 답답해 가지고 전화를 했었어. 그런데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상담하다가 중도에 포기했잖아. (사례 3)

도움이 되었어요. 저 생활하던 곳이 시골이고 주위에 다른 가족이나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혼하기 전에 어려운 문제를 말할 데가 없었잖아요. (사례 8)

방선옥(1992)은 이혼자들이 이혼 전에 받은 상담 기관에 대한 반응에서 긍정적이었다고 응답한 경우(40.0%)보다는 부정적이었다고 응답한 경우(45.0%)가 더 많았고, 그 이유로 상담내용 및 결과에 대한 불만족이 100%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문화되고 질 좋은 이혼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IV. 논 의

본 연구의 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를 나타낸 요인 및 이혼 후 적응에 중요하면서도 지금까지 간과된 요인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이혼자들의 경제적 형편은 열 세 사례 중 여덟 사례가 이혼 전보다 이혼 후가 더 나빠졌으며, 이 중 일곱 사례가 이혼 후 경제적 형편이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재 생활에 만족하거나 경제적 문제에 개의치 않았다.

특히 남편의 심각한 폭력과 외도로 이혼한 사례 5의 경우는 주로 식당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왔었고, 남편의 폭력과 도박때문에 가출한 사례 10의 경우는 식당에서 밤 시간에 일하는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과 살고 있는 자녀들이 마음에 걸릴 뿐 심리적으로는 편하고 현재 상태에 만족한다고 하였다. 비록 많은 여성들이 이혼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경제적 지위의 하락을 경험한다(Albrecht, 1980) 할지라도 이 요인이 바로 이혼 후 적응을 부정적으로 이끈다고 말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혼자들의 경제적인 문제는 이혼에 대해 준비해 온 과정과 취업 여부, 계층, 자녀양육 여부, 이혼자의 연령 및 건강 그리고 부모나 형제의 경제적 지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계층간 비교를 하지 않았지만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의 이혼에서는 이혼여성이 이전의 결혼생활에서 부양능력이 없는 남편과 자녀들을 부양하고 살아왔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혼 후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그리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즉, 하류층의 경우는 이혼으로 경제적 형편이 나빠졌다고 하나 중·상류층에 비해 그 폭이 상대적으로 작아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이들에게는 이혼이 오히려 삶에 대한 의지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남편의 도박으로 가정경제가 파탄되었던 사례 10의 경우에는 이혼 후에 남편으로 인한 허튼 손실이 없어졌고 혼자 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큰 어려움으로 지각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 형편이 더 나아진 경우도 다섯 사례나 있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이혼은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사례 1, 사례 2, 사례 4, 사례 12),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지도 않았고 그러한 능력도 없는 경우에는 이혼 후에 자신의 형편에 맞는 마땅한 일이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경제적 형편에 대한 계층비교를 통해 이러한 요인이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법 개정으로 이혼시 여성의 재산분할권과 자녀양육권이 인정되었다고는 하나 본 연구의 제보자들은 여성들이 이혼의 원인이 주로 남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이나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녀양육비 또는 위자료 등을 받지 못하였다. 법을 잘 몰라서 이혼 전에 남편이 미리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어 놓은 경우도 있고, 자녀를 악의로 유기한 경우도 있어 이혼 여성은 이혼 후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된

다. 따라서 이혼자들이 자녀양육에 대한 내용이나 법률적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을 받고자 할 때,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과 상담기관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또, 이혼 전과 후에 안정된 직업을 가진 경우와는 달리, 이혼 후에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열심히 노력한 결과 경제적 형편이 나아진 경우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단순노동이나 서비스 직종 또는 보험회사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어 노동 시간과 강도에 비해, 경제적 보상이 낮은 편이며, 자녀양육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이 더욱 힘든 상황이어서 여성의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어 이혼자들이 보다 향상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둘째, 자녀문제는 현재 제보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와 전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녀를 자신이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자녀로부터 정신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의 연구에서 자녀의 존재는 전반적으로 이혼 후 적응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인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제보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섯 사례 모두 자녀가 자신들의 삶의 희망이며 어려울 때 힘이 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자녀는 제보자에게 일상 생활을 유지하게 하며 바르게 살려는 삶의 동기와 원동력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요인이 서구와는 달리 이혼 후 적응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가 많거나 자녀가 어려서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서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였지만 그러한 어려움에 비해 한국에서는 자녀로부터 받는 심리적 지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한국적인 가족 가치관을 나타내는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제보자들의 연령이 30-40대여서 이 시기가 자녀와의 결속력이 강한 시기인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제보자들의 연령이 50대 이후에는 자녀가 이혼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지, 현재의 경우와 같이 자녀가 그들의 삶의 마지막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이다. 만약 자녀가 배우자가



주는 정서적 지지의 몫까지 대신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면 자녀가 독립기가 되었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자녀가 건강하게 독립이 되고 끝까지 희망적인 존재로 남아있다면 이혼자의 삶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단연구도 필요하다.

반면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상실감과 죄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혼 적응 프로그램에서 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의 적응도가 매우 높았다. 이는 본 연구의 제보자들이 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들의 모임에서 선정된 경우가 일곱 사례나 되어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나,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끼리 모임을 갖고 서로 이해하고 지지가 되어주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가족보다 더 큰 심리적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이혼자들에게 이러한 모임을 공식적으로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남편이 가출하여 장기간 별거에 들어간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례는 모두 이혼제안자였다. 그런데 이혼제안자와 이혼 후 적응과의 관련성을 볼 때 이혼을 제안한 사람이 적응을 더 잘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가 지지되지 않았다. 이혼을 누가 원했으며 이혼 과정을 누가 주도했고 그로 인해 어느 쪽이 더 많은 이익을 가졌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혼제안자는 곧 권력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보자들은 이미 전 배우자가 심각한 이혼 사유(외도, 폭력, 음주, 경제파탄, 의처증 등)를 제공해서 이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이혼을 제안했기 때문에 이혼제안자라고 해서 이혼과정에서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서구에서는 이혼제안자가 권력자인데 비해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혼제안자가 권력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의 이혼이 매우 불행한 결혼생활, 그 중에서도 대체로 여성이 남편의 외도, 신체적 폭력이나 정신적 학대 등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마지막 돌파구로서

선택되어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수긍이 가는 결과로 보여진다. Pettit와 Bloom(1984)은 제안자가 비제안자보다 그들의 결혼에 더 많은 불만을 품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과 관련지어서 별거나 이혼제안자의 1/4이상이 별거시점에서 외도에 관여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서구에서는 우리 나라의 경우에서와 같이 부부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심각한 이혼 사유에 의해 이혼이 제기되기보다는 현재의 배우자보다 더 나은 파트너가 생김으로써 이혼이 제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서구의 경우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이혼제안자일 지라도 그 내면의 역동성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혼제안자 요인이 이혼 후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한경혜(1993b)의 연구는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이혼제안을 누가 했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생활만족도와 비교해 양적으로 접근한 결과여서 이혼을 제안한 이혼자의 보다 심층적인 내면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제안자의 경우와 비교되지 않았고, 또한 서구에서와 같이 다른 매력적인 파트너가 생김으로써 이혼을 제안하게 된 경우와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결과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는 다소 제한점이 있다.

다섯째,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은 이혼 후 적응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서구의 경우는 대체로 이혼으로 인해 이혼부부의 관계가 종결되지는 않는다. 이혼부부사이에 자녀가 있거나 이혼 후에 각각 재혼하지 않은 부부들 뿐만 아니라 둘 사이에 자녀가 없거나 재혼한 부부들 사이에서도 높은 접촉빈도를 나타낸다(Carol, 1991).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보자들은 이혼 후 전 배우자와 전혀 또는 이혼 후 1-2회 정도의 전화접촉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열 한 사례, 84.6%), 대면접촉의 경우에도 자녀 문제로 인한 경우(두 사례, 15.4%)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이혼의 원인과 성격이 서구의 경우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혼제안자 요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서구에서는 이혼이 더 나은 결혼을 얻기 위한 대안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결혼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한 원인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이혼의 성격이 다른 경우와 계층간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제한점이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 이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여섯째, 이혼 후 기간과 적응과의 관련성에서 1-2년의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혼 후 겪게 되는 심리적인 문제들이 대부분 소멸되었지만 세 사례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10년 가까이 걸리기도 하였다. 이는 제보자 자신의 신체적인 결합(사례 2)이나 내향적인 성격(사례 6)으로 인해 다른 제보자들보다 오래 걸린 경우로 생각되어진다. 또한 사례 12의 경우는 평소 가졌던 높은 자존감이 이혼으로 인해 상처를 받아 역으로 지나친 열등감으로 작용하고 여기에 이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제보자에게 자기실패감을 더욱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였으리라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이혼의 상처보다 사회의 편견이 더 싫었다는 한 제보자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 이혼자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뿌리깊은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이혼자들이 부딪치는 심각한 어려움 중의 하나가 바로 세상의 편견과 냉대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점차 이혼이 증가하면서 이혼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불행한 결혼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변하고는 있지만, 이혼자나 이혼가정의 자녀를 대하는 일반인들의 태도 변화는 아직도 요원하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혼자나 이혼가정의 자녀에 대해 따뜻한 배려의 마음으로 그들을 인정해 주고, 지지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곱째, 이혼자들의 성적인 문제는 그 중요성에 비해 아직 연구가 너무 미미하며, 우리 사회의 풍토에서 이를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이혼자들이 이혼 후에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성적 욕구충족의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도 제보자들과 심층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가 이혼자들에게 이처럼 심각하리라고 예측하지 못했다. 첫 제보자와의 면담시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뒤에 이루어진 면담에서는 성적 욕구 문제를 보다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며, 이와 관련해서 제보자들

은 연구자에게 자신들의 성적인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이혼한 남성과의 비교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적 욕구 문제에 대해 이혼한 남성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이 선택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남성들은 우리 사회에서 그 행위의 건전성 여부를 떠나 여성들보다 성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 따라서 성적 욕구 문제는 여성 쪽이 더 심각하리라 생각된다. 이혼자들이 직면한 성적인 문제는 이혼자의 극히 개인적인 문제인 동시에 이혼자 공통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이혼자들이 성적 욕구 문제를 바람직하게 해결하기 위한 대처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혼이나 사별로 홀로된 사람들 또는 독신자들의 모임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져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건전한 모임의 장을 마련해 주거나 대중매체나 컴퓨터를 활용한 재혼의 기회마련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덟째, 과거에는 이혼자가 재혼을 하면 적응을 하는 것으로 정의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혼과 이혼 후 적응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Colburn(1992)의 연구에서 이혼 후에 일어난 일 중에서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인가에 관한 물음에 남성과 여성이 새로운 관계나 재혼을 각각 1위와 3위로 응답해 여성도 남성 못지 않게 새로운 이성관계나 재혼이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했다. 한경혜(1993b)의 연구에서도 재혼을 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혼 후 재혼한 사례가 없어 재혼이 이혼 후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제보자들의 새로운 이성관계의 형성 및 재혼에 대한 생각을 통해 가늠해 보면 일회성 만남이나 진지함이 결여된 만남이 아니라면, 재혼여부에 상관없이 바람직한 이성관계가 이혼 후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아홉째, 본 연구에서 제보자들의 이혼원인이 남편의 외도나 폭력, 음주, 경제파탄 등으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 남편에게 주책임이 있음에도 제보자들은 자신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실패감을 토로했다. 우리

사회가 이혼자들을 '결혼의 실패자' 혹은 '인생의 실패자'로 낙인찍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이 뿌리깊게 박혀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혼자 자신이 스스로를 실패자로 규정하거나 자신들을 비정상적인 사람이나 결점이 많은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 또한 이혼자 자신에게 중요한 문제가 된다. Albrecht(1980)는 이혼자들이 외상적이고 스트레스적인 이혼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요소는 자기실패감이라고 하면서 이혼자들이 경험하는 실패감은 참으로 줄이기 어렵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제보자들이 결혼은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며 결혼생활을 시작하면서 결혼에 영원히 헌신을 할 것이라는 신념을 내면화하였다. 그러므로 이혼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혼자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이혼은 여전히 실패로 규정되고 이 실패감은 이혼자에게 심리적 외상과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자아존중감의 손상은 위에서 본 사회적 편견에 의한 상처, 대인관계망의 축소와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을 야기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본다. 이러한 결과는 이혼 후 적응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여겨지며, 특히 자아존중감의 회복과 감정에 초점을 둔 Satir의 의사소통 가족치료가 효과적일 것이라 사료된다.

열번째, 현재 우리 나라에는 가족문제가 있을 때 상담소를 이용한다는 인지도가 낮을 뿐 아니라 상담소의 이용률도 낮다. 본 연구에서도 제보자들이 이혼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나 이혼당시에 상담소를 이용한 경우가 적었을 뿐 아니라 상담소의 이용이 별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담에 대한 홍보와 아울러 이혼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상담소와 상담원의 교육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현재 이혼을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이혼으로 가야만 하는 지에 대해 점검과 그에 따른 이혼 예방 및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결혼생활 향상 프로그램(Minnesota Couple Communication Program, Practical Application of Intimate Relationship Skills, Prevention and Relationship Enhancement Program)이나, 또는 이

혼으로 해결이 될 경우에는 가족문제를 통찰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이혼 준비나 이혼 후 결과에 대한 인식과 준비를 하도록 돕고, 이혼과정 중에는 이혼을 좀 더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혼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또한 이혼을 고려하거나 이혼과정에서 그 절차나 자녀양육문제, 재산 분할 등을 상담하는 이혼자의 요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질 높은 법률상담의 연계도 정책 차원에서 절실히 요구된다.

끝으로 제보자들에게 면접 전 질문지를 통해 이혼 후 적응에 도움이 되었던 항목을 1위에서 3위까지 고르게 했을 때, 제 1위가 종교활동(38.5%), 2위가 직업을 갖는 것(23.1%), 3위가 이혼한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15.4%)하는 것이었다. 이는 종교기관이 이혼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종교기관에서 이혼자들을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 V. 결 론

점차 이혼이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무조건 이혼을 막을 수는 없게 되었다. 이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이혼이 생긴 이상은 이혼으로 발생한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적응하여 새로운 삶을 재창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혼이란 사건을 현실적으로 해결하려는 이혼당사자의 의지가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혼자들이 이혼 후에 경험하는 주요한 문제와 이혼 후에 적응하는데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이혼 전·후의 상황이 다양한 열 세 명의 제보자를 중심으로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를 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이혼자들이 이혼 후 경험하는 중요한 문제들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이혼자 개개인이 처한 다양하고 독특한 상황에 따라 그 양상이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해석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연구결과의 해석에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혼제안자 요인에서 비제안자와 상호 비교를 하지 않은 점과 이혼 후 재혼한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있으므로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상호 비교작업을 거칠 때까지는 일반화에 주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사례에서 나타난 다양성 속에서 공통적이거나 개별적으로 나타난 특징적인 결과를 가지고 이혼 후 직면한 문제와 대처전략 그리고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이혼여성들은 이혼시에 자녀양육비나 재산 분할, 위자료 등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며(열한 사례, 84.6%), 그런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와 자녀수가 많은 경우에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수입이 아주 극심한 빈곤선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한 서구에서와 같이 적응에 중요한 부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않았다. 이는 이혼자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못하지만, 불행한 결혼생활보다는 현재의 생활이 더 낫다고 생각하며, 경제적 안정보다는 심리적 안정을 더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혼 후 적응에 사회적 상호작용, 즉 부모나 형제 등 가족과 친구 또 또는 이웃들과 많이 접촉하고 지지를 받는 사람들과 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적응에 긍정적이었다.

셋째,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는 경우보다 자녀의 존재 자체로 인해,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이혼 후 겪게 되는 심리적·정신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자원이 되어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 한편 이혼자들은 자녀양육자인 경우에 자녀의 연령에 따라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에 대한 죄의식과 자녀의 상실로 인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넷째, 이혼자들은 이혼 후에 성적욕구를 해소하지 못하는 생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개인적인 방법으로 해소하거나 전 배우자와 성적 관계를 갖기도 하였으며, 아홉사례(69.2)의 경우가

스스로 억제하거나 종교활동을 통해 절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이혼제안자 요인은 이혼 후 적응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여섯째, 전 배우자에 대한 애착이 적을수록 전반적으로 적응에 긍정적이었다.

일곱째, 재혼이나 새로운 이성과의 만남이 이혼 후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이혼적응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방향과 관련하여 이혼원인별 이혼적응에 관한 연구와 이혼자들의 적응을 연구할 때 사례를 구하기 힘든 점이 있으나 이혼남성을 포함시켜 이혼적응에 있어서의 남녀차이를 비교해보는 연구와 이혼 후에 재혼한 경우도 포함하여 좀 더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혼부부를 이혼 전부터 시작하여 이혼과정 및 이혼 후의 전이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비용이나 표본관리 등의 문제가 따르지만 종단연구가 필수적이다. 이혼자들의 이혼 후의 적응에 관련된 요인들의 영향이 이혼으로 인한 직접적인 원인인지 아니면 이혼자 자신의 현재 다른 상황적인 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밝혀내고, 이혼자들이 그러한 요인들에 대해 어떻게 적응해 가는지를 이해하고 규명하기 위해서도 최소한 5년 정도의 종단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이러한 연구들이 계속해서 축적되므로써 우리나라의 이혼자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이혼 후 적응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1) 이용숙, 김영천 편,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방법과 적용, 교육과학사, (1998).
- 2) 김정옥, 이혼의 사회적 배경고찰, 한국 가족학 연구회(편), 이혼과 가족문제, 도서출판 하우, (1993).
- 3) 김혜련, 남자의 결혼, 여자의 결혼, 또 하나의 문화, (1995).
- 4) 박찬미, 서병숙, 도시주부의 결혼만족도와 이혼

- 태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1), (1987), 91-110.
- 5) 방선옥, 이혼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여대 석사학위논문, (1992).
  - 6) 변화순, 이혼가족을 위한 대책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6).
  - 7) 부산일보, IMF이후 경제파탄 이혼 2배 증가, (1998. 6. 25).
  - 8) 부산가정법률 상담소, 30년 상담사건 통계 분석 자료집, (1998).
  - 9) 이태영, 한국의 이혼제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1968).
  - 10) 임춘희, 이혼 후 재혼 전까지의 적응, 한국사회의 이혼실태와 대응방향, 1998 한국가족학회 추계 학술대회, (1998).
  - 11) 조선일보, 교제기간이 짧을수록 파경 많다, (1999. 4. 28).
  - 12) 최재석, 한국가족연구, 일지사, (1982).
  - 13) 통계청, 인구통계연보, (1998, 1999).
  - 14) 한경혜, 이혼과 부부문제의 이론적 고찰, 한국가족학 연구회(편), 이혼과 가족문제, 도서출판 하우, (1993a).
  - 15) 한경혜, 한국 이혼부부의 적응과 관련변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가족학 연구회(편), 이혼과 가족문제, 도서출판 하우, (1993b).
  - 16) 황옥자, 부모의 이혼이 자녀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1980).
  - 17) Albrecht, S. L. Reactions and adjustment to divorce: Differences in the experiences of males and females. *Family Relations*, 29, (1980), 59-68.
  - 18) Arbuthnot, J., & Gordon, D. Does mandatory divorce education work: A six-month outcome evaluation. *Family and Conciliation Courts Review*, 34, (1996), 60-81.
  - 19) Arendell, T. J. Women and the economics of divorce in the contemporary United States, 13, (1987), 121-135.
  - 20) Berman, W. H. The role of attachment in the post-divorce exper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988), 496-503.
  - 21) Berman, W. H., & Turk, D. C. Adaptation to divorce: Problems and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1), (1981), 179-189.
  - 22) Bohannon, P. The six station of divorce. In P. Bohannon (Ed.), *Divorce and after*. New York: Doubleday, (1970).
  - 23) Braver, S. L., Salem, P., Pearson, I., & DeLus, S. R. The content of divorce education programs: Results of a survey. *Family and Conciliation Courts Review*, 34, (1996), 41-59.
  - 24) Brown, P., Felton, B. J., Whiteman, V., & Manela, R. Attachment and distress following marital separation. *Journal of Divorce*, 3, (1980), 303-317.
  - 25) Buehler, C., Betz, P., Ryan, C. M., Legg, B. H., & Trotter, B. B. Description and evaluation of the orientation for divorcing parents: Implications for postdivorce prevention programs. *Family Relations*, 41, (1992), 154-162.
  - 26) Bursik, K. Correlates of women's adjustment during the separation and divorce process. *Journal of Divorce*, 15, (1991), 137-161.
  - 27) Chiriboga, D. A., Roberts, J., & Stein, J. Psychological well-being during marital separation. *Journal of Divorce*, 2, (1978), 21-36.
  - 28) Colburn, K. Jr., Lin, P. L., Moore, M. C. Gender and Divorce Experience.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17(3/4), (1992), 87-108
  - 29) Colletta, N. D. Support systems after divorce: incidence and impa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1979), 837-846
  - 30) Diedrick, P., Gender Differences in Divorce Adjustment, in 「Women and Divorce/ Men and Divorce」, S.S. Volgy, New York, London: The Haworth Press, (1991).
  - 31) Federico, J. The marital termination period of the divorce adjustment process. *Journal of Divorce*, 3, (1979), 93-106.

- 32) Geasler, M. J. & Blaisure, K. R. Court-connected programs for divorcing parents in Michigan. *Family and Conciliation Courts Review*, 33, (1995), 484-494.
- 33) Goetting, A. Divorce outcome research: Issues and perspectives. *Journal of Family Issues*, 2, (1980), 350-378.
- 34) Goode, W. J. *After divorce*. New York: Free Press, (1956).
- 35) Granvold, D., Pedler, L., & Schellie, S. A study of sex-role expectancy and female postdivorce adjustment. *Journal of Divorce*, 2, (1979), 383-393.
- 36) Hetherington, E., Cox, M., & Cox, R. The aftermath of divorce, Pp. 149-176 in J. E. Stevens, Jr., & M. Matthews (Eds.), *Mother-Child, Father-Child Relations*,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1977).
- 37) Hetherington, E., Cox, M., & Cox, R. Divorced fathers. *Psychology Today*, 10, (1978), 42-46.
- 38) Hetherington, E., Cox, M., & Cox, R. Effects of divorce on parents and young children. In M. Lamb(Ed.), *Nontraditional families: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Hillsdale, NJ: Erlbaum, (1982).
- 39) Hunt, M. W., & Hunt, B. *The divorce experience*. New York: MacGraw-Hill, (1977).
- 40) Kitson, G., & Raschke, H. Divorce research: What we do, What we need to know. *Journal of Divorce*, 4, (1981), 1-38.
- 41) Kohen, J. From wife to family head: transitions in self-identity. *Psychiatry* 44, (1981), 230-240
- 42) Kramer, L., & Washo, C. A. Evaluation of a court-mandated prevention program for divorcing parents: The Children First program. *Family Relations*, 42, (1993), 179-186.
- 43) Kurdek, L., & Blisk, D. Dimensions and correlates of mothers' divorce experiences. *Journal of Divorce*, 6, (1983), 1-24.
- 44) Nelson, G. Moderators of women's and children's adjustment following parental divorce. *Journal of Divorce*, 4, (1981), 71-83.
- 45) Pett, M. G. Predictors of satisfactory social adjustment of divorce single parents. *Journal of Divorce*, 5, (1982), 1-17.
- 46) Pettit, E. J., & Bloom, B. L. Whose decision was it? the effects of initiator status on adjustment to marital disrup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 (1984), 587-595.
- 47) Price-Bonham, S., & Balswick, J. O. The noninstitutions: Divorce, desertion, and re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2, (1980), 959-972.
- 48) Raschke, H. J. The role of social participation in post separation and postdivorce adjustment. *Journal of Divorce*, 1(2), (1977), 129-139.
- 49) Spanier, G. B., & Casto, R. F. Adjustment to separation and divorce: An analysis of 50 case studies. *Journal of Divorce*, 7, (1979), 32-49.
- 50) Thabes, V. A Survey analysis of women's long-term, postdivorce adjustment.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27(3), (1997), 163-175.
- 51) Weiss, R. S. *Marital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1975).